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14호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7일
발 의 자 : 나상희 의원
찬 성 자 : 유영주, 이수옥, 박종호, 정순희, 서병완 의원 (5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13.시행)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,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
라. 기 타
1) 조 례 안 : 별첨
2) 조례안 예고 : 2021. 12. 8. ~ 2021. 12. 12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, 지역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.

【관 계 법 령】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